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이하 ‘저축’ 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신탁·채권 등(이하 ‘예금 등’ 이라 한다)의 약관(특약 포함)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1세 이상인 거주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2세 이상인 거주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3세 이상인 거주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4세 이상인 거주자,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3조(대상예금 등)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금 등과 각 취급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

1.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2. 어음·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3. 조세특례제한법상 등에 따라 기 취급 중인 비과세 예금 등
4. 외화예금

제4조(예치한도)

-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 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 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합니다.
-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5조(예치한도 산정)

- ①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합니다.
- ② 정액(정기)적립식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유적립식 및 추가 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예치한도 변경)

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비과세처리)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

제8조(표시방법)

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장의 표지·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적용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거래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은행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은행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탁·채권 등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저축의 전환여부)

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제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에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제13조(명의변경 등)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제14조(예치한도 초과 입금 제한에 따른 책임)

예치한도 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시행일 : 2015.1.1.)

- ① 【시행일】 본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과세처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특약의 시행 전 기존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자의 이자소득 등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합니다. 다만, 2015년 이후 만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만기 종료 이후의 이자소득 등은 과세합니다.